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규정

1997. 7. 10. 제정	1998. 11. 25. 개정	2001. 6. 28. 개정	2003. 5. 23. 개정
2003. 11. 17. 개정	2004. 10. 8. 개정	2005. 8. 4. 개정	2007. 4. 17. 개정
2007. 9. 28. 개정	2007. 12. 21. 개정	2008. 4. 23. 전문개정	2009. 7. 14. 개정
2009. 12. 16. 개정	2012. 12. 14. 개정	2013. 12. 13. 개정	2014. 7. 10. 개정
2015. 2. 24. 개정	2016. 6. 24. 개정	2017. 11. 13. 개정	2018. 4. 12.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9. 26. 개정	2019. 12. 17. 개정	2020. 7. 28. 개정
2020. 12. 2. 개정	2021. 10. 27. 전부개정	2023. 1. 4. 개정	2024. 2. 8. 개정
2024. 7. 2. 개정	2024. 11.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6조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시설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기본 이념) 교육시설공제사업은 1948년 8월 9일에 설립한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부터 업무를 수행한 교육시설공제사업을 계승하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원상복구 수준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이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교육청사와 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을 말한다. 이하 “교육지원시설”이라 한다), 연구기관 등의 건물·부속물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교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연구기관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전기·통신·소방·급배수위생설비, 냉·난방·통풍설비, 승강설비, 가스설비 등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부속물”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 또는 토지에 부속된 것과 비탈면을 말한다.
5. “물품”이란 교구·설비, 실험·실습용 장비·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을 말한다.
6. “공제가액”이란 교육시설의 재산을 재조달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며 해당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7. “공제가입금액”이란 안전원과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원이 지급하는 최대 공제급여를 말한다.
8. “재난”이란 화재·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말한다.
9. “복구 실소요액”이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 실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0. “원상복구”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을 손해를 입기 직전과 동등하게 재축 또는 재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감염”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실험·실습실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감염 피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을 말한다.
12. “특별담보”란 회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약정한 재난 또는 손해를 말한다.
13. “자기부담금”이란 재난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1. 20.>
14. “공제사고”란 안전원의 관련 규정, 지침, 약관에 따라 회원 또는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5. “공제급여”란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원의 관련 규정, 지침, 약관에 따라 회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말한다.
16. “의무보험”이란 피공제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각종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은 법률, 정관과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0.>

제2장 공제가입

제5조(공제가입 대상) 공제가입의 대상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로 한다.

제6조(공제가입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부속물

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1.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한 동의 건물 또는 부속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다만, 공익의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임대한 경우와 폐교는 제외한다.
2. 학교의 부속시설 중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부속물
3. 그 밖에 구조나 용도 등이 공제가입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또는 부속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1. 임대·판매용 물품
2. 자동차, 선박, 항공운반구. 다만, 토지·건물에 정착·고정된 실험·실습용은 제외한다.
3. 귀금속, 문화재, 골동품류, 각종 통화, 유가증권, 문서, 컴퓨터 기록·데이터, 원고, 설계도, 도면 또는 도안
4. 농·수·축·임산물과 수목
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물 또는 부속물에 수용된 물품
6.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지 아니하는 물품
7. 그 밖에 공제가입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조(특별담보 등의 가입) 회원 또는 회원을 대리하는 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재난에 부가하여 지진, 도난, 파손, 누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특별담보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일부 재난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제8조(공제가입 신청) ①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시설을 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해당 교육시설의 신축, 취득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기가입: 매년 안전원의 가입안내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가입신청
2. 추가가입: 연중 상시 가입 신청

② 공제가입 신청은 공제가입 신청공문을 안전원에 제출하거나 회원이 이용하는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이하 “공제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은 공제가입 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가입을 신청한 회원이 규정과 약관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제정보망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제가입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공제가입 신청에 대한 통지) ① 안전원은 회원의 공제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시기 이전에 서면이나 공제정보망으로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은 회원의 추가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날부터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보되, 신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와 점검) 안전원은 필요한 경우 공제에 가입신청이 되었거나 가입확정이 된 교육시설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제11조(공제회비의 결정과 납부 등) ① 공제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되, 보상범위와 재난위험 정도에 따라 할인·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

1.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는 건물의 연면적에 해당 공제요율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안전원에서 정한 재난복구비 보상한도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고가건물은 공제가입금액에 공제요율을 곱하여 공제회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2. 부속물 또는 물품에 대한 공제회비는 해당 부속물 또는 물품의 공제가입 금액에 공제요율을 곱하여 정한다.
3. 특별담보에 대한 공제회비는 정액 공제회비로 정하거나 공제가입금액에 특별담보 공제요율을 곱하여 정한다.

② 회원은 정기가입과 추가가입의 경우 안전원에서 통지한 날까지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공제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공제가입증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공제정보망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에 한해서는 공제회비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공제가입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알릴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이나 공제정보망으로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구조·용도를 변경하게 된 경우. 다만, 추가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3.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을 다른 보험(공제)에 중복 가입한 경우
4.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신축, 증·개축, 환경개선공사 등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회원이 알게 된 경우

② 안전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따라 공제회비가 증감하게 되는 때에는 증감된 공제회비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③ 안전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가된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교육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원이 운영하는 별도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위험변경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공제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안전원은 다음 연도 공제회비 결정 및 신규 공제제도 도입(담보범위 확대) 등 공제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매년 3분기 이내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공제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책임기간) 공제에 대한 안전원의 책임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가입의 경우: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1년간
2. 추가가입의 경우: 가입 신청공문이 안전원에 도달된 날 익일 0시 또는 공제정보망에 가입 신청한 날 익일 0시 중 빠른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 다만, 회원이 지정한 날은 가입 신청공문이 안전원에 도달된 날 익일 또는 공제정보망에서 가입 신청한 날 익일을 경과한 날이어야 하며 안전원과 회원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신규 회원(기존 회원 소속의 신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제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안전원과 회원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장 공제급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이 재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에 해당하는 재난복구비, 신체손해 배상금·보상금, 재물손해 배상금, 재난복구지원비 등을 지급한다.

② 안전원은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 외에 회원이 추가로 가입한 특별담보 손해를 보상한다.

③ 안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재난복구비) ①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건물 또는 부속물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난복구비를 지급한다.

1. 건물 또는 부속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복구 실소요액을 지급한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이거나 건물의 공제가입면적이 건축물대장 연면적 또는 실측한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한 만큼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물품이 재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난복구비를 지급한다.

1. 물품의 전부가 소실, 유실 또는 파손 되었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은 공제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물품의 일부가 소실, 유실 또는 파손 되었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복구 소요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가를 지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한 만큼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복구비 신청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공제사고의 경우에는 재난복구비 지급 기준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신체손해 배상금·보상금) ①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화재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1. 20.>

②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시설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금·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1. 20.>

1.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률 및 약관에 따른 배상금
2.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및 약관에 따른 배상금
3.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률 및 약관에 따른 보상금

③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에서 별도로 산정한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1. 교육연구활동중인 학생, 교직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2. 학교의 장 또는 연구주체의 장 등의 요청 또는 계약에 따라 교육연구활동에 참여 중인 자

④ 제3항의 추가 배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하여 생긴 신체상의 손해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배상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4. 11. 20.>

1. 사망의 경우: 사망한 때(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
2. 부상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그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

3. 후유장애의 경우: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로 노동력상 실정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애의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와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급기준은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재물손해 배상금) 안전원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재난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금을 지급한다.

1. 화재로 인한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내규와 약관에 따라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화재 외의 재난으로 인한 경우: 관계법령, 별도로 정한 내규와 약관에 따른다.

제18조(재난복구지원비) ① 안전원은 재난 발생 시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 복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진단비
2. 급식지원비
3.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비
4. 설계비
5. 삭제
6. 이동·보관비
7. 석면해체비
8. 법정수수료
9. 감염에 따른 오염 청소·소독비
10. 심리상담지원비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지원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안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상을 목적으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핵연료 물질 등에 의한 사고,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1. 20.>
4. 지진(지진 해일을 포함한다) 또는 분화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6. 재난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원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
7. 건물 또는 부속물의 노후가 심하여 무너지거나, 부실설계, 부실공사 또는 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재난복구비를 지급한 후에라도 안전진단 또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 해당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공제급여를 환수한다.
8. 사용 중 고장 또는 조작 실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다만, 회원이 이미 납부한 공제회비는 환급한다.
10. 별도의 약정 없이 안전원에서 통지한 날까지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11조의 납기일 이전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동일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무보험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안전원에서 결정한 공제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20조(재난발생시의 의무) ① 회원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난발생 상황과 그 손해정도를 안전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보전 또는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며, 안전원의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재난으로 인하여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⑤ 안전원은 회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제급여 지급 신청) ① 회원 또는 회원을 대리하는 자는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공제정보망으로 안전원에 공제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필수서류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공제급여 지급결정) ① 안전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지급신청서와 필수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결정을 기한 내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한 내 그 사유를 회원에게 서면이나 공제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은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원명과 학교 등 교육기관명

2. 공제급여 지급 내용과 지급결정금액

③ 안전원은 지급결정 시 긴급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현장 조사 또는 공제급여 산출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④ 지급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가지급 급여) ① 안전원은 지급할 공제급여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원이 추정한 공제급여의 50% 이내에서 가지급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가지급 급여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공제급여의 지급방법) ① 안전원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공제급여를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안전원은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이 공제회비 납부 이전에 공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원은 필요한 경우 공제회비를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회원에게 받은 이후에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제25조(공제급여의 분담) ① 이 규정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보험회사 및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각 계약을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며, 이 경우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를 회원이 포기한 경우에도 안전원의 공제급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공제급여	=	손해액	×
$\frac{\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text{손해액}}$			

② 이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그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 회원이 다른 계약의 공제급여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안전원의 공제급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4. 11. 20.>

제26조(공제급여심의위원회) 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중요한 안전을 심의하고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제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회원은 안전원의 공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제급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③ 공제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0.>

제27조(현물보상) ① 안전원은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재난발생에 따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축, 수리하거나 현물을 보상함으로써 공제급여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적용범위와 대상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위) ① 안전원은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회원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안전원에서 지급한 금액이 회원이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피해가 발생한 해당 교육시설의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회원과 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원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건물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자(임차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임차인의 피용인)가 임차면적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안전원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원이 요구하는 증거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은 권리의 보존 등을 위하여 회원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4. 11. 20.>

⑤ 제1항에 따른 대위 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특별담보) ①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담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는 이 규정 제1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한 건물 또는 부속물의 지진(지진 해일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간접손해 등을 담보하며, 가입대상과 지급 기준 등은 특별약관에 따른다.

2. 물품포괄 특별담보는 가입정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정 공제가입금액으로 포괄 담보하며, 가입대상과 지급 기준 등은 특별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0.>

② 물품확대 특별담보는 이 규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재난에 부가하여 추가적으로 물품 손해를 담보하며, 가입대상과 지급 기준 등은 특별약관에 따른다.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제4장 공제가입의 해지 등**

제32조(공제가입의 해지) ① 회원은 교육시설의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공제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안전원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개정 2024. 11. 20.>
2. 회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4. 회원이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제33조(공제가입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입은 취소로 한다.

1. 공제가입 시 회원 또는 회원을 대리하는 자의 고의 또는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개정 2024. 11. 20.>
2. 교육시설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손해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안전원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3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안전원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은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한다. <개정 2024. 11. 20.>

1. 회원
2. 학교 등 교육기관
3. 그 밖에 계약의 내용

② 안전원은 회원이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5조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환급한다.

제35조(공제회비의 환급) 안전원은 공제가입이 취소,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회비를 환급한다. 다만, 공제가입기간 중 교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여 공제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해당 교육시설의 잔여기간에 대한 공제회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0.>

1. 취소인 경우: 납입한 공제회비 전액. 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사기행위로 취소가 된 때에는 납입한 공제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개정 2024. 11. 20.>

제5장 보칙

제36조(위험의 분산) 안전원은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 등과 재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부수사업) ① 안전원은 회원 또는 회원을 대리하는 자가 교육시설의 건축 또는 소유·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부담하는 재난 외의 위험과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수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멸시효) 공제급여 청구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회비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9조(관할법원) 공제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안전원은 회원과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규정의 해석) ① 안전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규정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은 규정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침, 기준 등으로 따로 정하거나 관련법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안전원은 공제계약의 체결·유지, 공제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원은 공제계약의 체결·유지, 공제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보험관련단체 또는 다른 공제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공제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제42조(준거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부칙 (1997.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약관) 종전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 통상회원 및 특별회원 재해복구비 급여약관”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11. 25.)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28.)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3.)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8.)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7.)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8.)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전까지 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종전의 “재난복구비지급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재난복구비지급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난복구비지급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7. 14.)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4.)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호 물품포괄 특별담보의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칙 (2024. 11.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